

[Redacted]

판 결

사 건 [Redacted] 물품대금

원 고 주식회사 [Redacted]

[Redacted]

공동대표이사 [Redacted]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유

담당변호사 [Redacted] 조효동

피 고 1. 주식회사 [Redacted]

[Redacted]

송달장소 [Redacted]

사내이사 [Redacted]

2. [Redacted]

[Redacted]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[Redacted]

1.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7,268,254원 및 이에 대하여 [REDACTED]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